

북 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410호 2012. 8. 30(목)

고 시

제2012-80호 도로명주소 고시 -----2

공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부산광역시 북구

편집 : 문화체육과 ☎309-4071

고 시

도로명주소 고시

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80호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8월 30일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효열로219번가길 외 4건

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(지번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지 참조(3건)				

▷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	변경사유
해 당 없 음			

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
별지 참조(2건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309-4761)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(www.bs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8. 3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(고시일자 : 2012.08.30)

1. 도로명주소 부여

번호	종전주소(지번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 사유
1	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629-2	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19번가길 38-5	2012.08.30	2010.02.03	효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 되는 도로의 첫번째 도로
2	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59-1	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06번길3	2012.08.30	2010.02.03	시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3	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80	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33번길237	2012.08.30	2010.02.03	의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 되는 도로

2. 도로명주소 변경

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	변경사유
1		해 당	없	음

3. 도로명주소 폐지

번호	종전주소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
1	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08	2012.08.29	건물말소
2	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19번가길 38-5	2012.08.29	건물말소